

##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안으로 확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1. 27(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 “대규모기업집단”의 용어를 삭제하고, 각각의 규제별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설정·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하였다.

둘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는 예외인정 대상으로 추가기로 했으며, 증시물량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도초과 출자분은 매각하지 않도록 하되, 그 의결권 행사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시한을 2년간 연장

(2001. 3월말→2003. 3월말)기로 했다.

셋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경영권방어가 필요한 계열회사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기로 했다. 다만,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내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에 따라 의결권행사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관회의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계획이다.

기타,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부채비율 100%요건 등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를 1~2년간 유예하고,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기간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기로 하였다.

##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정 추진

공정위는 최근 생존 및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제휴, B2B거래 등 기업간의 다양한 협력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기업간의 협력이 경쟁제한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경쟁촉진효과도 병존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효율성 증대 등 경쟁촉진효과가 큰 공동행위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제정·운용할 예정이다.

공동행위 심사기준의 내용을 보면 첫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핵심적인 요소인 합의는 계약, 협

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심결·판례 등에 의해 인정되어 온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을 명시하였고, 행위의 일치 이외에 합의추정을 더욱 보강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예시하였다. 둘째,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동행위의 성격을 분석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경쟁제한효과를 분석,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공동행위 참여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시장지배력을 심사하며, 공동행위 존속기간, 자산에 대한 공동사용·통제 수준 등을 종합·고려하여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간의 결속정도를 심사한다. 또한 공동행위를 통한 규모의 경제, 지식·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혁신의 속도, 중복비용 감소 등 경쟁촉진효과를 분석하고,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01년 12월중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 공동행위심사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외국의 동향

### 미국 : 경쟁사업자간의 협력에대한 포괄적인 심사지침 마련

미국은 「경쟁사업자간 협력의 심사지침(Antitrust guideline for collaborations among competitors)」을 제정(2000. 4)하여 전략적 제휴, 조인트벤처 등 다양한 경쟁자간의 연합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 심사지침은 당연위법원칙과 합리원칙의 적용대상 등 경쟁제한성 검토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 EU : 유럽 공동시장에 적용되는 심사기준 마련

유럽연합도 유럽 공동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평적 협력에 관한 심사기준(Guidelines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horizontal cooperation)」을 제정(2001. 3)하여 공동행위 유형을 연구·개발, 생산, 구매, 마케팅, 표준화, 환경 등 6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심사기준을 서술하고 있다.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분석을 위한 고려요소는 미국과 동일하며, 다만 조사 없이 합법성을 인정해 주는 합산된 시장 점유율의 상한선이 공동행위 유형에 따라 15%~25%로 상이하다.

### 일본 :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지침 마련

사업자간의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독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을 마련('93)하였는데, 공동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판단기준은 참가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기술개발능력 등 사업능력에서 우수 사업자가 많이 참가할수록 공동연구개발의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공동연구개발에 수반하는 부속협정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동연구개발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의 비밀유지·기술유통의 제한이나 연구개발에 수반하는 비용·작업분담 등은 위법성이 낮고,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인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제한하거나 성과의 개량발명을 일부 참가사에게만 허용하는 경우 위법성이 높다.

## 공정위, 국제 인터넷 상거래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간 국제협력 사이트에 참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들이 외국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 소비자피해구제 웹사이트 구축작업(eConsumer.Gov Project)」에 참가할 예정이다.

eConsumer.Gov Project는 금년 4. 24에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 주도로 13개 OECD 회원국이 참여하여 출범하였다.

동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첫째, 참여국가의 소비자피해 구제·조사 기관을 연결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참여국의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IMSN의 피해구제 웹사이트에 피해사항을 신고하고, IMSN 사무국의 중개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추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곤란할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가

소재한 해당국의 참여기관이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둘째, 접수된 소비자피해사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의 300여개 소비자보호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피해정보데이터베이스 「소비자 파수꾼(Consumer sentinel)」을 전세계적 네트워크로 확대할 계획이다.

eConsumer.Gov Project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상 소비자피해에 대한 조사권을 보유한 국가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민간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eConsumer.Gov Project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 등 관련절차를 금년내에 완료한 후,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제 인터넷상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 7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금년 중 30대 기업집단에 신규로 지정된 7개 기업집단에 대해 2001. 7. 16.~9. 8.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총 2,717억원 규모의 부당한 지원성거래를 적발하여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사실의 공표명령과 함께 총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지금까지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선금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기업어음을 저리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무보증전환사채를 저리로 매입하거나 주식고가매입을 통하여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부당지원행위 수법이 이번 조사대상 기업집단에서도 폭넓게 활용되었다.

## 장례식장 『표준약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상주에게 받는 빈소 사용료, 외부음식물 이용 불허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2001. 12. 14 승인하였다.

동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 요금 산정기준 마련(제6조), 이용시

설의 계약기간을 종전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표시(제5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이용을 이용자에게 강제하거나 웃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업자의 의무사항 부과(제7조),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명문화(제10조) 등이다.

\* 장례식장 표준약관 전문은 본지의 '부록(77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 2001. 1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공정위는 2001년 1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1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신규채무 보증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

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1년 11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3개사가 신규편입되고, 4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1년 12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2001년 11월 4일 616개사에서 615개사로 감소하였다.

### ◆ 2001년 1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2001. 11. 1.	편 입				제 외						증 감	2001. 12.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매각	정산	침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616	3	-	-	3	1	3	-	-	-	4	△1	615
1~4대	192	1	-	-	1	-	-	-	-	-	-	1	193
5~30대	424	2	-	-	2	1	3	-	-	-	4	△2	422

◆ 2001년 1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

○ 편입 : 3개사(회사설립 3)

○ 제외 : 4개사(합병 1, 지분매각 3)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현대	현대모바일(주)	온라인정보 제공업	회사설립 (99.6%)	-	-	-
금호	현리환경(주)	하수처리장건설, 관리및운영업	회사설립 (80%)	-	-	-
동양 화학	군장에너지(주)	열병합발전업	회사설립 (50%)	-	-	-
쌍용	-	-	-	용인개발(주)	골프장운영업	지분매각 (100%→0%)
금호	-	-	-	한림상운(주)	해운대리점업	대림코퍼레이션합병 (2001. 11. 1.)
				(주)중부	건축자재제조 및 판매업	지분매각 (100%→0%)
동국 제강	-	-	-	동화산업(주)	고철가공업	지분매각 (83%→0%)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판매 안내

본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분기별로 수록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을 발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제21권3집

- 2001년도 3/4분기(2001. 7. 1~9. 30) 심결 수록. 1085면 정도
- 2001년 10월 30일 발간
- 판매가격: 회원(사) 38,000원, 비회원(사) 43,000

공정거래관련 자료에 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02.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